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임 세 영

I. 회의 개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제5실무작업반(이하 '작업반')은 지난해 제 54차 UNCITRAL 본회의(Commission)에서 △ 도산절차에서의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 △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을 신규 의제(동시 진행)로 채택함에 따라, 직전 제 59차 작업반 회의부터 이들 두 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UNCITRAL 국제도산 모델법에 관한 사법적 관점(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The Judicial Perspective)」의 개정분에 대한 검토가 기타 의제로 다루어졌다.

II. 주요 논의 사항

1. 제1의제 : 도산절차에서의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 관련 법적 문제점

가. 성안될 문서의 성격, 범위 및 형식

문서의 대상을 고려하여 어떤 형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지침, 실무지침, 툴킷(toolkit) 또는 양자의 결합 형태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 국가는 현 시점에서 문서의 형식 및 주요 대상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형식에 대한 이른 결정이 이후 실질적인 내용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우선 각 국가별 국경간 자산 추적 및 회복 수단을 최대한 많이 수집·정리한 후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문서의 형식을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나 법적 수단의 누락을 우려하는 국가들은 톨킷 형태의 채택을 꾸준히 지지하였다.

자산의 추적 및 회복 수단은 다수의 법적·비법적 쟁점들이 관련된 복합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일법 제정을 통해 다루기 어렵고, 특히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기술적 측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양쪽의 법제 및 수단이 균형적으로 소개될 것을 강조하는 만큼 문서의 형식, 즉 규범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안될 문서의 내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1의제는 도산재단의 가치 최대화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도산법에 관한 기존 UNCITRAL 규범의 연장선상에서 그 논의가 진행된다. 따라서 그 논의 범위는 일단 ‘민사(civil)’ 및 ‘도산절차’로 한정되지만, 실무 등을 감안하여 그 외 영역(예 : 형사법 등)에 대한 검토 자체를 미리 일률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았다.

나. UNCITRAL 도산규범 중 자산의

추적 및 회복(ATR) 관련 용어

UNCITRAL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이

번 작업반 회의 의제문서 중 하나로 ①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이하, “도산법 입법지침”), ② 1997년에 제정된 UNCITRAL Model Law on Cross Border Insolvency(이하, “MLCBI”), ③ 2018년에 제정된 UNCITRAL Model Law on Insolvency-Related Judgments(이하, “MLIJ”) 및 ④ 2019년에 제정된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이하, “MLEGI”) 중 자산의 추적 및 회복(Asset Tracing and Recovery. 이하 “ATR”)과 관련된 용어를 추출하여 그 개념을 정리한 목록표를 제공하였다. 작업반은 이 목록표 기재 순으로 기존 개념 정의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ATR 관련 용어를 검토함에 있어 작업반은 기존 UNCITRAL 문서들과의 통일성 및 정합성을 최대한 유지하되 ATR만의 특성, 관련 법제 및 실무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개념들은 다양한 국가별 법제 및 실무 등을 감안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가 하면, 특정 개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열거적인 설명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주요 개념들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채무자의 재산(Assets of the debtor), 자산 추적(asset tracing) 및 도산재단(insolvency estate)

자산의 이전, 은닉, 추적 및 회복, 부인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결과를 도산재단 및 채무자의 재산 구성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즉, 사무국은 도산절차 개시 후 취득 자산, 부인권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회복된 자산 및 은닉재산에 관한 언급을 ‘채무자의 자산(assets)’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이 항목들이 도산재단(insolvency estate)의 일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이 점에 관하여 이번 회의에서 최종 의견이 수렴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단정적인 개념 정의를 지양하고 개념이 사용되는 실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 (2) 주된 이익의 중심지(Center of main interests, COMI)

도산법 입법지침의 서문(Introduction)에 기술된 COMI의 정의 규정(B. Glossary (f))

에 대해 최근 논의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MLCBI Guide¹⁾, para 145에 COMI의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기술된 내용²⁾을 참고하여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 (3) 기존경영자 관리인(Debtor-in-possession, DIP), 도산대표자(Insolvency representative), 독립된 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

도산절차상 일정한 권한을 갖는 자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되었다.

먼저 현재의 DIP 개념 정의가 DIP가 사업에 대한 완전한 지배가 아닌 부분적인 지배권을 보유했을 때의 상황을 포섭 및 설명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기초한 문구 수정 제안이 있었다³⁾.

또한 “도산대표자(Insolvency representative)”의 정의에 “insolvency professional(또는 practitioner)”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산절차를 대표하는 도산대표자와 DIP를 보조 또는 감독하는 도산실무가는 그 권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정의하

1) 「Guide to Enactment and Interpretation of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를 뜻함.

2) “the location: (a) where the central administration of the debtor takes place, and (b) which is readily ascertainable by creditors”

3) 실무상 DIP의 권한은 도산절차 개시 후에 법원의 감독하에 행사되는 것이므로 “...full control over the business...”에서 “full”을 삭제하고 정의 조항의 말미에 “after commencement of the insolvency proceeding”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개진되었다.

(4) 판결(judgement) 및 법원(court)

이번 의제문서 상 “법원(court)” 개념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는데, 국가마다 서로 다른 ATR 실무관행 및 용어 사용 맥락 등을 모두 포섭하려면 보다 폭넓은 개념 정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권한 당국 및 도산절차를 관할하지 않는 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다루며 부인절차를 관리하는 등 도산절차의 개시를 촉발하거나 ATR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UNCITRAL 도산규범 중 ATR 관련 조항

사무국은 앞으로 성안될 규범문서가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ATR의 근본 취지⁴⁾를 규범 성안 목적 부분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작업반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작업반 내 각 국가들은 사무국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재 및 책임(sanctions and liabilities)”에 관한 언급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자산의 추적 및 회복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강한 수단보다는 부인권의 행사, 민사적 구제 수단 및 우호적인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권 관련

ATR 관련 절차는 그 본질적인 특성 상 국내의 예서 서로 다른 법원에서 개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할권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산절차를 개시하는 법원의 조정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2) 임시조치(보전처분)

사무국은 기존 UNCITRAL 도산규범에 예시되어 있는 보전처분의 유형을 정리하고, 직전 작업반 회의에서 제안된 다음 항목들에 관한 논의를 요청하였다.

- ① 도산절차의 개시 전 임시 도산 대표자(interim insolvency representative)의 선임
- ② 국제적 ATR에서 임시 도산 대표자의 권한
- ③ 도산절차 개시 전 단계(보전처분 단계 포함) 및 도산절차 종결 후의 단계에서 법원과 도산대표자 간의 공조·조정

4) 국내 및 국제도산에서 도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분산을 방지하고 ATR을 보다 간이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보전처분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이번 회의에서는 위 논점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도산 대표자(insolvency representative)의 권한

도산 대표자에게 ATR 관련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특히 도산대표자에게 채무자의 비공개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직접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참여국의 견해가 나뉘었다.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직접적 접근권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일부 국가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신중한 입장의 국가들도 존재하였다. 다만, 도산재단의 보전 및 보호와 관련하여 도산 대표자의 고유권한을 부주의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아울러 안전장치가 ATR의 효과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4) 부인권(Avoidance)의 행사

ATR의 맥락에서 부인권 행사의 확대 또는 제한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도산 절차 개시 후의 부

적절한 양도와 관련하여 부인권에 관한 ATR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반대 견해는 부인권이 도산 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맥락과 관련되고 도산 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미승인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제도가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도산절차 개시 후에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 국내법제를 고려할 때, 도산 절차 개시신청 후 절차 개시까지의 기간 동안(이른바 ‘gap period’)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보전처분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5) 제재(sanctions)

ATR에서 제재의 역할에 대한 시각 및 제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었다. 상당수 국가는 채권자 입장에서 제재의 주된 목적은 결국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원활한 회복이므로 ATR 맥락에서는 가급적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강제성 있는 제재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보다는 도산절차 상 다른 조치(부인권 등)들도 충분히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실효성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부연되었다. “제재”라는 용어는 형법적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구제(remedies)’와 같은 대체적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제재의 실제 부과에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한 법원의 유연성 발휘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제재 및 책임이 ATR의 효력을 저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라. ATR 관련 법적 수단의 예시 목록

사무국은 ATR을 위한 법적 수단⁵⁾을 정리하고 그 목적, 발동의 요건 및 안전장치 등을 정리하여 의제문서로 제공하였다.

이 목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 및 다른 ATR 관련 수단들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사무국이 각 회원국들의 ATR 관련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 중인바,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 작업반 회의의 의제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2의제 :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

이 의제는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을 통일시키고 도산법정지법(=도산절차개시국

법)의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도산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감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고 그 예외사유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이를 전제로 진행되었다.

가. 작업반에서 성안할 규범문서의 형식 및 목적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모델법과 입법지침을 마련하자는 의견 등으로 문서 형식에 대한 입장이 나뉘었다. 다만 양자의 결합 형태, 구체적인 입법 형태(제정 또는 개정) 등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상당수 참여국들도 특정한 문서 형태에 대한 선호 또는 지지 의견은 표명하되, 현 시점에서 이를 확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문서의 성안 목적에 대해서 사무국은 몇 가지 항목들을 제안하였다⁶⁾. 대부분 적절

5) ① 도산절차 개시 전 도산재단의 가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provisional measures), ② 채무자 및 그의 자산·부채와 부인권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공개명령(disclosure order), ③ 정보·증거에 대한 접근 확보를 위한 명령과 증거보전명령 및 ④ 가압류·가처분 등 재산동결명령 등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맞추어 추가 및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나. 규범의 적용 범위

작업반 회의에서 마련할 입법 규정들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도산절차’의 의미가 핵심적인 논의사항이 되었다. 도산절차개시 전의 보전절차(임시절차, interim proceedings), 법원(또는 행정) 절차로서의 조기구조조정절차(pre-insolvency proceedings), 법률 규정에 의한 하이브리드(hybrid) 워크아웃절차, 법원 밖에서의 자율적인 워크아웃절차 등과 관련하여,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규범의 적용대상을 어느 절차까지 포섭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아울러 이번 의제문서에서는 ‘도산절차’로 인정받기 위한 5가지 기준 요소(기존 UNCITRAL 도산규범에 근거함)⁷⁾들이 제시되어 논의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임시·잠정절차(interim proceedings)를 도산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였으나, 구조조정절차(restructuring proceedings)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워크아웃은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영역이어서 일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법원 회생절차 외의 구조조정절차(restructuring proceedings)의 경우, 상당수 국가에서 해당 절차가 도산법에 따라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다. 도산법정지법 적용 원칙 및 그 예외

(1) 도산법정지법의 의미

“도산법정지법”의 개념 정의를 좁게 또는 넓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⁸⁾, 도산절차개시국의 도산법

- 6) ①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입법적 접근방법들간의 조화 달성,
- ② 도산법 입법지침이 제정된 2004년 이후의 도산법 실무상의 수요에 대응하여 회원국들에게 간소한 최신 규칙을 제공. (즉, (i) 도산법정지법(*lex fori concursus*)의 적용을 강화하고, (ii) 도산법정지법의 의미 및 범위와 그 적용의 예외 명확화)
- ③ 도산절차가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효과를 가지는 도산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채권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적법한 기대를 위협에 빠뜨리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 및 그 밖의 부당행위 방지
- 7) ① (사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집합적인 절차일 것, ② 도산 관련 법에 따를 것, ③ 법원의 통제·감독하에 있을 것, ④ 법인 또는 자연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insolvent*) 또는 심각한 재정적 고통(*financial distress*)에 놓여있을 것, ⑤ 채무자가 상업적 주체로서 청산 또는 회생 목표를 갖고 있을 것 등
- 8) 도산법 입법지침의 용어 정의에서는 ① 도산법정지법을 “도산절차가 개시된 국가의 법”이라고 넓게 규정하고 있고, 도산법 입법지침의 권고 31부분에서는 ② 도산법정지법은 ‘도산절차가 개시된 국가의 도산법’

이외에 ‘도산과 충분한 관련성을 갖는 다른 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의견이 수렴되었다. ‘도산과의 충분한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향후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도산법정지법의 개념에 도산법정지의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는 참여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다. 채권, 상계 및 노동계약 등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도산법정지법의 적용 강화 및 예외 인정

도산법정지법의 적용례에 관한 목록(도산법 입법지침 권고 31)을 확대함으로써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상계의 취급’,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과 같이 목록 추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도 있었으나⁹⁾, 디지털 자산 및 지식재산권, 부인권, 채권들 간의 우선순위, 담보부채권자의 취급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부인권의 준거법 : EU도산규정을 참고하여 도산법정지법 이외의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 ② 상계의 취급 : (i) 도산절차의 개시 후 상계의 가능성 및 요건, (ii) 도산절차 개시 전에 행하여진 상계의 효력, (iii) 도산절차개시 전에 한 상계의 효력의 부인, (iv) 외국의 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상계의 국내도산절차에서의 효력 등에 관한 준거법
- ③ 담보부채권의 취급 : 도산법정지법 대신에 담보물 소재지의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는 경우

노동계약의 취급에 대해서는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관련 논의 동향을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과 관련하여, 기존의 도산법 입법지침은 지급 및 결제 제도(payment and settlement system)와 규제 금융시장(regulated financial markets)에 대하여 도산법정지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비추어 그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고, “regulated

이라고 좁게 규정함.

9) ‘환경피해 및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작업반의 의견이 모아졌다.

financial markets”의 개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가가 의견을 같이 하였다.

다. 공서양속에 기한 외국법 적용의 배제

이번 회의에서는 다른 UNCITRAL 도산 규범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법의 내용이 입법국의 공서양속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입법국은 그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 다음 회의 의제문서의 형식 관련

다음 회의 의제문서를 모델법 초안 형식으로 작성할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논의 결과, 사무국은 현재까지 의견이 수렴된 사항에 관하여는 ‘입법 규정(legislative provisions)’ 및 관련 ‘주석(commentary)’으로 구성되는 의제문서를 작성하고, 아직 의견이 수렴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논의 진행에 용이한 형태의 별도 자료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3. 제3의제 : 「UNCITRAL 국제도산모델법 : 사법적 관점」의 개정본(안) 검토

「UNCITRAL 국제도산모델법 : 사법적

관점(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The Judicial Perspective)」은 국제도산, 특히 MLCBI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법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1년에 완성된 문서이며, 2013년에는 MLCBI Guide의 개정 및 그 동안의 판례를 반영하여 개정본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본(안)은 2013. 4. 15. 이후에 축적된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2013년 판을 현행화하고, 아울러 2020년에 완성된 UNCITRAL의 「MLCBI에 관한 판례 요약(Digest of Case Law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본(안)은 이번 회의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채택되었으며, 금년 제55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표될 예정이다.

4. 향후 일정

이번 작업반 회의 결과 보고서는 오는 6월 27일부터 3주간 열리는 제55차 UNCITRAL 본회의에 정식보고서로 제출된다. 제3의제로 다룬 「UNCITRAL 국제도산 모델법에 관한 사법적 관점」개정본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제1의제 및 제2의제에 대한 논의는 올해

하반기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61차 작업반 회의에서 계속된다.

III. 평가 및 시사점

도산절차에서의 자산의 추적 및 회복, 준거법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현행 법제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고려하여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¹⁰⁾ 특히 자산의 추적 및 회복 수단에 관한 논의 내용은 우리나라 법제 및 관련 실무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CITRAL 국제도산 모델법에 관한 사법적 관점」개정본 역시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않은 개념들(외국 주절차·종절차, COMI, 자동중지 등)을 다루고 있어 채무자회생법의 해석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지만, 향후 법개정 등과 관련하여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의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공통된 이슈는 ‘기존 규범문서들과의 정합성 및 일관성 유지’와 ‘법제 및 실무상 변화의 적절한 반영’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도산법에 관한 그간 작업반의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

한 균형 지점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존 UNCITRAL 도산규범들의 성안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최근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도산법제 및 실무 상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후자에 더 비중을 두어 향후 논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제60차 작업반 회의부터 현장 참석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논의가 보다 활발해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반기 작업반 회의에서도 유의미한 논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10) 한 예로 우리나라는 도산절차 개시신청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이른바 “gap period” 동안의 채무자 재산의 보호 및 보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과거 및 현재 의제 논의 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자산의 추적 및 회복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